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국내 석유업계의 친환경 전환 투자 본격화 전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❶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❷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❸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전(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김기열 (044-203-5221)

1. 추진 경과

- ☐ (산중위) 5명의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 의결('23.11.23)
* 홍정민 의원('23.4), 김성원 의원('23.7), 이인선 의원('23.8), 김희재 의원('23.9), 박대수 의원('23.10)
- ☐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4.1.8)
- ☐ (본회의)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24.1.9)

2. 주요 내용

- ① (법 목적 개정) “탄소중립화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추가하여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구체화
- ②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친환경정제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 하위법령(시행규칙)에서 규정
- ③ (“석유대체연료”의 정의 변경) 친환경 연료를 명시적으로 구분
 - (기존)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 포함 → (개선) 화석원료 기반 ①석유대체연료와 ②바이오연료, ③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를 구분
- ④ (지원사업 근거 마련)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지원 등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 또한,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운영 명시
- ⑤ (관리·감독 강화)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시 보고의무 규정* 및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 * 친환경정제원료 투입시 산업부장관에게 사용계획 및 내역을 보고(법 제38조의3 신설)
 - **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 사용 금지 (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5항 신설)